

의안번호	2114979
의 퇴 인	서일준 의원
회 답 일	2022.0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비용추계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979)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제1항)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세액공제율 인상	○	
세액공제 한도 상향	X	·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

II.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입 변화: 향후 5년 간 총 -2,296억원, 연평균 -459억원

[표] 개정안에 재정수입 변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월세세액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①)	-352	-399	-452	-513	-581	-2,296	-459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4년 352억원, 2028년 581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296억원(연평균 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월세세액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①)	-352	-399	-452	-513	-581	-2,296	-459

II. 재정수반요인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제1항)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3%p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5%로 인상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조정

[표 2]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제도	현행	개정안
자격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현행과 같음
공제방식	1년간 월세액의 10%	1년간 월세액의 12%
	1년간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자,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제 외)	1년간 월세액의 15% (현행과 같음)
한도	750만원	85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어 2023년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안 적용
 -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4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에 발생
- 월세 세액공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구간별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이 36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에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구간별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은 현행 공제한도(750만원)보다 낮은 36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됨
 - 개인별로는 연간 월세 지출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함
 -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는 공제한도 내의 월세 지출액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집계하므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9~2020년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13.4%)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최근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둔화 추이를 감안하여 2020년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17) 23.6 → ('18) 25.1 → ('19) 18.1 → ('20) 13.4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월세세액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추계
-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에 공제율 인상분(2~3%p)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인원수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이용
 - 총급여구간별 월세 세액공제 적용 인원, 1인당 평균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금액 자료 이용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이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결정세액만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가정

2. 상세 내역

- (제도 개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¹⁾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하여 1년간 월세액(한도 750만원)의 10~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2014년 신설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2%,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0% 적용
- (감면 실적) 2015~2020년 동안 월세세액공제 적용 인원은 연평균 21% 증가,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22% 증가

1)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표 3] 월세 세액공제 감면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적용인원	244,763	293,694	339,762	400,265	537,064	363,110
(증가율)	(18.8)	(19.5)	(18.3)	(17.4)	(34.2)	(21.3)
세액공제액	66,688	82,099	105,653	124,757	144,030	104,645
(증가율)	(23.0)	(23.1)	(28.7)	(18.1)	(15.4)	(21.6)

주: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20년 기준 213 억원으로 예상됨

-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이 현행 공제한도액을(750만원) 하회하는 360만원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인별로는 연간 월세 지출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함

[표 4]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0년 기준

총급여 규모	현행			개정 후			
	인원 ¹⁾	1인당 공제대상 금액	1인당 세액공제 금액 ²⁾	1인당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	1인당 결정세액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총 세수변화
	(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A	B	C=B×10~12%	D=B×2~3%p	E	F=min(D,E)	G=F×A
합계	345,715	2.7	0.31	0.36	3.6	-	-21,295
1천만 이하	-	-	-	-	0.9	-	-
1.5천만 이하	17	0.7	0.06	0.01	0.01	0.01	0
2천만 이하	921	0.8	0.09	0.02	0.06	0.02	-15
3천만 이하	29,587	1.0	0.13	0.02	0.18	0.02	-619
4천만 이하	90,114	2.2	0.26	0.04	0.58	0.04	-3,971
4.5천만 이하	61,197	2.9	0.34	0.06	1.07	0.06	-3,496
5천만 이하	55,157	3.0	0.37	0.06	1.46	0.06	-3,361
6천만 이하	72,906	3.3	0.37	0.08	2.14	0.08	-5,985
8천만 이하	35,816	3.6	0.36	0.11	3.77	0.11	-3,849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2) 5천만~6천만원 이하 구간 중 5.5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인상분은 3%p, 5.5천만~6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인상분은 2%p 이므로, 5천만~6천만원 이하 전체 구간의 공제율 인상분은 2.5%p 인 것으로 가정하여 1인당 세액공제 추가대상금액을 산출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둔화 추이를 감안하여 2020년 증가율(13.4%)을 따를 것으로 가정

[표 5] 2016~2020년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월세세액공제액 ¹⁾	52,264	64,621	80,873	95,492	108,257	80,301
(증가율)	(23.5)	(23.6)	(25.1)	(18.1)	(13.4)	(20.7)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4년 35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296억원(연평균 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월세 세액공제 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①)	-352	-399	-452	-513	-581	-2,296	-459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과장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박지원
연락처	02-6788-4662
	jwpark1209@nabo.go.kr
